

(관인생략)  
서울특별시

시정 151 - 4

(725-61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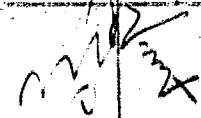




81. 11. 17.

수신 수신처 상호

제목 정원 조정 (동보)

1. 기구 기전 및 잡급 직원 정규직화에 따라 퇴원과 같이 정원  
조정 내용을 동보하니 시행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2. 급변 정원 또는 급속된 고용원의 총원 및 전보는 인사과와  
협의하여 조치할 것.

- 첨부 1. 정원 조정 내역표 1 부.  
2. 기구 도표 1 부. 끝.

계	조정계장	동보계장	정리계장	관리계장	동식물계장	관리과장	소장	영	석
									



서울특별시

수신처: 퇴직 관리부서.

81. 11. 17	23년								
분류사									

定 員 調 整 表

機關名: 서울 대공원 관미사업소

81年 11月 9日

職種別	職 名	現 行	改 定	增 減	增 減 內 訳
일반직	3 급	1		△1	행정 또는 시설직 1
"	4 급	2	1	△1	건축직 1
"	5 급	6	2	△4	전기직 1, 농림직 1, 모목직 1, 건축직 1
"	6 급	8	4	△4	기계 또는 전기직 1, 수의 또는 축산직 1
					모목 또는 건축직 3, 행정직 + 1
"	7 급	12	5	△7	행정직 2, 모목 또는 건축직 5
"	8 급	7	3	△4	행정직 2, 건축직 1, 기계직 1
"	9 급	5	2	△3	행정직 1, 기계 또는 전기직 1, 모목
					또는 건축직 2, 농림직 + 1
고용원		23	15	△8	자문사 2, 파견원 1, 대장정비원 3,
					운전원 3, 사환 + 1
계		64	32	△32	

서울특별시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설치조례  
및 사무분장규칙

서울특별시 서울대공원 관리사업소 설치조례

서울특별시 서울대공원 관리사업소 설치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설치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여가선용 및 보건향상을 위한 휴식처인 서울대공원을 관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 소속하에 서울특별시 서울대공원 관리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한다)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사업소의 위치는 시장이 따로 고시한다.

제3조(소장) (1) 사업소에 소장 1인을 두고, 소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2)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4조(공무원의 정원) 서울대공원 관리사업소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 및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5조(하부조직) (1) 사업소에 관리과와 동, 식물과를 두고 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동, 식물과장은 5급 지방수의관 또는 지방농림기좌보 보한다.

(2) 관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서, 보안, 관인 관수 및 인사
2. 예산, 회계 및 물품 관리

3. 동원시설물의 관리 및 보호

4. 비용 관리

5. 소내의 다른과의 또는 다른계의 부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3) 동, 식물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동물원 시설 계획

2. 동물원 수용 계획

3. 동물의 사육 및 방역 관리

4. 동물원 운영 및 관리

5. 공원내 조경 계획 및 녹지관리

제6조(직무대행) 소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관리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 남서울대공원 건설 사업소 설치 조례를 폐지한다.

(별표)

서울대 공원관리 사업소 지방공무원 정원표

직 급	정 원	정 원 내 용
1 급		
2 급		
3 급		
4 급	1	행정직1
5 급	2	행정직1, 농림 또는 수의직1
6 급	4	행정직2, 축산 또는 수의직1, 농림직1
7 급	5	행정직2, 전기직1, 농림직1, 수의직1
8 급	3	행정직1, 토목직1, 수의 또는 축산직1
9 급	2	행정직1, 농림직1
별정직 기능직 고용직	15	전공1, 사육원1, 수의2, 타자원1, 경비원2 청부2, 전달부1, 원정2, 운전원2, 산원1
합 계	32	

정 원 증 감 내 역

서울대공원 관리 사업소

계 급	련행	조정	증감	증 감 내 용
1 급				
2 급				
3 급	1		△ 1	행정 또는 시설직 1
4 급	2	1	△ 1	건축직 1
5 급	6	2	△ 4	전기직 1, 농림직 1, 포육직 1, 건축직 1
6 급	8	4	△ 4	기계, 전기 1, 수역. 축산 직 1, 포육. 건축 직 3, 행정 직 +1
7 급	12	5	△ 7	행정 직 2, 포육. 건축 직 5
8 급	7	3	△ 4	행정 직 2, 건축 직 1, 지적 직 1
9 급	5	2	△ 3	행정 직 1, 기계. 전기 직 1, 포육. 건축 직 2, 농림 직 +1
별정 직 기능 직 고용 직	23	15	△ 8	차트사 2, 마자원 1, 대장 정리 원 3, 운전 원 3, 사환 1
합계	64	32	△ 32	

서울특별시 서울대공원 관리사업소 사무분장 규칙

서울특별시 서울대공원 관리사업소 사무분장 규칙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울대공원 관리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한다)의 하부 조직 및 분장사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과) (1) 관리과에 관리계와 경리계를 두고, 관리계장 및 경리계장은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

(2) 관리과의 계별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계

- 가. 문서 관리 관수 보안 및 청사 관리
- 나. 인사, 복무 및 후생
- 다. 기본 운영 계획의 수립 및 계산
- 라. 공원내 각종 시설의 운영관리
- 마. 공원내 질서 유지
- 바. 소내 다른과 및 과내 다른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경리계

- 가. 회계 및 물품관리
- 나. 급전 및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 다. 세입금 수납



파. 매표 및 수표

마. 각종 사용료 수납

바. 공사용자재의 수급 계획 및 출납 보관

제3조(동.식물관) (1) 동.식물관에 동물계와 조경계를 두고, 동물계장은 6급 지방수의사 또는 지방축산기사로, 조경계장은 지방농림기사로 보한다.

(2) 동.식물관의 계별 분장 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동물계

가. 동물원 운영 계획 및 시설 계획

나. 동물원 수용 계획

다. 동물사료 수급 계획

라. 공원내 동물의 보호와 육성에 관한 사항

마. 기타 다른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조경계

가. 공원내 조경 계획

나. 수목관리 및 식재와 유지 보호

다. 식물원 운영 계획 및 시설 계획

라. 기타 공원내 식물의 보호와 육성에 관한 사항

부 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폐지)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 남서울대공원 건설사업소 사무분장 규칙을 폐지한다.

정직, 집서, 창조

(관인생략)  
서울특별시

과징 1268- (21)

723-1973

1981. 10. 16.

수신 수신지참조

제목 재권관리위원 해임 및 업무처리요령 시달

1. 재권관리에 관한 관제연구 해임 및 업무처리요령을 별첨과 같이 시달하니 구 본임재권 관리관은 담당자 및 관계직원에게 교육, 숙지토록 하여 재권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

첨부: 재권관리에 관한 관제연구 해임 및 업무처리요령 1부, 공.

계	공	과	장	장	과	장	소	장	
		<i>(Handwritten Signature)</i>	<i>(Handwritten Signature)</i>	<i>(Handwritten Signature)</i>		<i>(Handwritten Signature)</i>	<i>(Handwritten Signature)</i>	<i>(Handwritten Signature)</i>	<i>(Handwritten Signature)</i>

서울특별시

수신처 시과1-77, 서구1-17(재무과), 직합1-6, 서사1-70, 서소1-8.

정부공문서규정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국장 김관중 인



인 의 의 의		81. 10. 16.			
		21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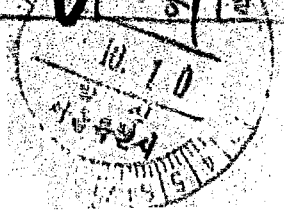
"관인생략"  
서 울 록 번 시

녹지 4448/1 (362 4588) 87. 10. 8.  
수신 수신서 참조  
참조 녹지(산업)과장  
제목 도시계획법 개정에 따른 산림법 적용에 대한 집의 회신

도시계획법 개정의 따른 산림법 적용에 대하여 건설부장관  
에게 집의 하위단체 방침과 같이 회신되어 통보하니 업무 처리에 장애  
없도록 함것.

- 첨부 : 1. 집의회시요지 7부  
2. 집의내용 7부  
3. 회신공문 사본 7부. 끝.

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 울 록 번 시 장  
수신처 : 서구 77, 남산공원, 남서울대공월소장

		81. 10. 12	실내			
		210P. 5.	수업			
			시간	10	12	14
			이차 차량			

도입 7153.1-20431

81. 9. 29.

수신 서울특별시상

제목 도시계획법 개정에 따른 산림법 적용에 대한 집의 회신

- 1. 녹지 7153.1-721 (81. 8. 28)의 관변입니다.
- 2. 위 회신에 의한 도시계획법 개정에 따른 산림법 적용에 대한 집의 회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합니다.

다 음

제1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4조에 의한 허가를 받았을 때는 산림훼손, 입산물채취, 굴취등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나 반출에 대해서는 산림법의 규정에 따라야 하는것임.

제2에 대하여

제4조 1항 단서 후분은 산림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규정 이므로 피해 목적 벌채, 조림을 위한 간벌, 제벌, 수종갱신, 주벌등은 산림법에 따라야 하는 것임.

제3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67조에서 사방사업법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으므로 사방사업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것임.

제4에 대하여 : 제1항을 참고함것.

제5에 대하여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벌채 대상목의 범위를 논할것이 아니라 경미한 행위인지 여부를 가려야 하는것임.

제6, 제7 및 제8에 대하여 : 산림법 규정을 적용 할때(도시계획법 제4조 단서 후분의 경우)에는 산림법을 도시계획법을 적용 할때(도시계획법 제4조 본문 및 단서 전문의 경우)에는 도시계획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러한 해석은 양법의 목적을 고려할때 상호모순되는 것은아님. 끝.

# 집 의 회 시 요 지



집 의	회 시
<p>1.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법제 허가시 산물의 반출 처리여부</p> <p>2. 도시계획법 제67조 제3항 제1호에 의한 허가 이외는 모두 산림법에 외거 허가 함이 가한지외 여부</p> <p>3. 도시계획구역내 사방지인 경우 사방 사업법에 의한 법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 여부</p> <p>4.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 제1호 허가시 산림의 입목이 저축될 경우와 산림내에서 조림이 수반되지 않아하고 도시계획법이 아닌 마법령에 의한 법제외 경우와 산림외에서 도시계획법이 아닌 마법령에 의한 법제외 경우 법제와 산물의 반출 처리여부</p> <p>5.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 단서 규정의 경미한 행위와 도시 계획 구역내 입목의 정의와 산림의 입목중 법제 허가불 요하지 아니 하는 대상목의 범위 여부</p>	<p>1. 산물의 반출은 산림법의 규정외 외거 처리</p> <p>2. 산림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제 동은 산림법에 외거 처리 (조림을 위한 간벌 제방 수종갱신, 주벌, 피해목 법제)</p> <p>3. 도시계획법상 사방사업법에 대한 규정이 있으므로 동법의 외한 허가를 받아야함.</p> <p>4. 제1호 참고</p> <p>5.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법제 대상 목의 범위를 논할것이 아니라 경미한 행위 인지 여부를 가려야 할것임.</p>

6. 전5호의 사항이 산림내인 경우에는  
허가없이 할수있는 행위인바 이 경우  
산림법에 의거 조치할수 있는지 여부

7. 도시계획법상 원상복구 명령후  
행위자가 불응시 강제 이행 규정이  
있는바 산림내인 경우는 산림법에  
의거 조치 하여도 가한지 여부

8. 산림내에서 동일한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산림법과 도시계  
획법상 상이한바 이 경우 중형인 산림법  
에 의거 조치할 것인지 여부

6.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 단서  
후문의 경우에는 산림법을 적용  
하고 전문의 경우에는 도시 계획  
법을 적용

7. 전 6호와 같음.

8. 전호와 같음.



관외. 참가. 양로

관외생략

서울특별시

인사 730 460 675 81.11  
수신 수신처참로  
제목 국제회의 참가사건 양로

1. 국이730-40730(71.11.4)에 관외생략 사항인

2. 최근 각종 정부관, 이경부가 및 민간단체회의에 참가하고 있는 일부 한국대표들이 국제회의에서 중동문제(중동문제, 이집트, 이란, 이라크 문제 포함) (남아프리카 문제 포함),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문제 포함 (포괄) 시 동문제에 정부인장이 다른 지도를 취함으로써 미인적으로 불의를 야기할 수 있다. 특히 아프리카 외교정책 수행상 차질을 초래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으나,

3. 상기와 같은 사태는 참석대표들이 관외생략 회의에 대한 정부인장에 관한 사전지식의 결여에서 기인되는 것으로 사료되나, 향후 국제적으로 주요정치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본체가 거론될 가능성이 있는 각종 정부관, 이경부가 국제회의에 대표로 파견되는 경우엔 반드시 사전에 의부부의 외교적 지도를 받도록 함이바,

4. 또한 회의장내중 국제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갑자기 제기되는 경우엔 우선 학과 지인들과의 연락을 취하고 대표단이 취합인자의 과하여 연외하도록 함

계	조경계장	동문계장	경과계장	관외계장	동상부파장	관외파장	소장

서울특별시

수신처 : 시사마천기관

문 서 처 리	접 수 일	1987. 11. 17.	경 내	
	장 수 일	2346 호	수 영 사	
	전 송 일		지 서 기 화	19 11 월 일
	기 타 일		지 시	
	기 타 일		사 항	